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4. 3.
부산진구청장

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모집구분	인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계약
조사관리요원				
스마트 조사관리자	2	· 교육: '26. 5. 19.(화)~5. 21.(금)(기간중2일) · 조사: '26. 6. 1.(월)~7. 22.(수) · 내검: '26. 7. 23.(목)~7. 31.(금)	85,680/1일 (내검: 82,560/1일)	근로계약
조사관리자	14	· 교육: '26. 5. 19.(화)~5. 21.(금)(기간중2일) · 조사: '26. 6. 8.(월) ~7. 22.(수) · 내검: '26. 7. 23.(목)~7. 31.(금)	85,680/1일 (내검: 82,560/1일)	
조사지원담당자	1	· 교육: '26. 5. 19.(화)~5. 21.(금)(기간중2일) · 조사지원: '26. 6. 1.(월)~7. 31.(금)	82,560/1일	
조사원	77	· 교육: '26. 5. 19.(화)~5. 21.(금)(기간중2일) · 준비조사: '26. 6. 11.(목)(1일) · 본조사: '26. 6. 12.(금)~7. 22.(수)(28일)	2,559,360*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가입)
예비조사원	3	· 교육: '26. 5. 19.(화)~5. 20.(수)(2일)	165,120원	포기자 발생시 대체 투입

※ 계약금액은 세전금액임.

- 1) **교육: 대면 집합교육 필수 이수**(교육장소 및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2) **근로계약 조사관리요원**
 -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가산하여 지급
- 3) **도급계약 조사원:** 배정받은 조사업무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도급계약 금액 전액 지급
 - 소득세, 지방소득세 3.3% 공제 후 수당 지급, 중도포기 및 부실허위조사 시 도급금액 감액 지급
 -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조사를 완료한 조사원에게 교통보조비 1일 6,000원 추가 지급(교육일 제외)

☞ *교통비 포함 계약금: 2,733,360원
- 4) **스마트조사관리자**는 조사관리자 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 5) 기관의 사정에 따라 모집기간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6) 합격자가 포기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대체 모집하며, 부적합한 지원자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7) (스마트)조사관리자는 7. 23. ~ 7. 31. 중 **내검요원으로 연계채용**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타 구·군 중복지원 불가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공통)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조사관리요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지도·통솔 할 수 있는 자 ▪ (조사관리요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조사원)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문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진구 거주자 ▪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통계관련 및 전산관련증 자격 소유자 ▪ 저소득층·다자녀보육가구·북한이탈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 <p>※ 우대사항 세부조건은 [붙임1] 응시원서 뒷면 참조</p>

*우대사항 대상자일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 가점 없음

□ 수행 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스 마 트 조 사 관 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조사 관련 안내 및 질의사항 대응 ○ 온라인 우선 사업체 대상 안내 및 독려 ○ 스마트조사관리자는 6. 8일부터 일반관리자와 동일한 역할로 전환
조 사 관 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관리자 업무 지원 ○ 불응사업체 설득 지원 ○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입력 ○ 조사원별 조사 진도 파악 및 관리 ○ 조사표류 정리·편철 및 제출 ○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온라인조사 관리 ○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 ○ 대체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조 사 지 원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 조사표 입력 ○ 총조사 홍보 업무 ○ 온라인조사 관리 지원 ○ 기타 총조사 관련 업무 지원
조 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사 참여 홍보 및 안내문 배부 ○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조사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착오사항 확인 및 보완 등 ○ 사업체명부 수정 및 보완 ○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3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26. 4. 3.(금) ~ 4. 21.(화)
- 접수기간: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26. 4. 7.(화) ~ 4. 14.(화)
 - 조사원: '26. 4. 7.(화) ~ 4. 21.(화)
- 접수 방법: 서류 구비 하여 방문 접수

접수처	주소	연락처
기획예산과	부산진구청 4층 기획예산과 법무조직계(시민공원로 30) ※ 업무 시간(09:00~18:00)내 제출, 중식시간(12:00~13:00) 제외	☎051)605-4031,4038

- 제출 서류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붙임파일 1~4 참조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혹은 구청1층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조사원만 해당)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 **개인 실비(실손)보험에 상해(산재)내용 포함된 경우도 가능**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부산진구 이외 타구·타기관(동남청등) 실시 통계조사)
- 최종학력증명서(통계전공자), 통계관련 혹은 전산(한글, 워드 등)자격증 사본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빙 서류

※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모두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기간 내에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4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방법
 - 관리요원(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서류전형(1차) 및 면접전형(2차) 채용
 - 조사원: 서류전형 채용
 - 모집구분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심사일정

구분	심사 일정	내용
조사관리요원 (서류+면접)	▪ 접수: 4. 7.(화) ~ 4. 14.(화)	▪ 구청 방문 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4. 17.(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전형: 4. 22.(수)	▪ 부산진구청 10층 청소년예술학교
	▪ 최종합격자 발표: 4. 24.(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조사원 (서류)	▪ 접수: 4. 7.(화) ~ 4. 21.(화)	▪ 구청 방문접수
	▪ 합격자 발표: 4. 28.(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겸업사항 등)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보수를 감액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부산진구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지급 및 향후 2년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우 채용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모집관련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제7조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 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문의처

- 기획예산과 법무조직계(☎051-605-4031, 4038)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성명·성별·생년월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연락처: 조사원 합격시, **합격 통보를 알리기 위한 필수이므로**, 핸드폰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건강보험: 이증취업 확인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를 기재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본인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주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포함된 가족

5. 상해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 상해보험(산재보험) 내용: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 골절 등
- 상해보험(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란에 체크하시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미가입’ 에 체크합니다.

(조사원 본인 의무가입 사항으로, 미가입자는 조사원 합격 후, 계약 전까지 가입해야 함)

6. 통계조사 경험: 통계청 및 관공서 등 통계조사 관련 경력을 기재 합니다.
 - **통계 관련 경력은 증명 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단, 부산진구에서 실시한 경우는 불필요)**
7. 통계관련 기초 지식 및 전산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8. 기타(우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우 대 사 항	
통계조사 경험자	경제총조사, 경제통계조사(사업체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등),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자격증 보유 및 통계 관련 전공	통계관련 통계-데이터 전공, 통계관련 자격(사회조사분석사)등 소지자
	전산관련 한글, 워드, 엑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다자녀 보육가구	19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 포함, 자녀 2명 이상을 보육하는 가구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

【붙임 2】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지원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미기입	조사명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성명	
<p>(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p> <p>■ 자기소개, 과거 경력 관련 내용 등 - 과거 경력, 일반경력(통계조사 경력 등) 등을 자유롭게 작성</p> <p>○ 작성요령 - 직무수행 계획, 관련분야 활동·업적, 지원동기 등을 기술하되,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보유, 안정적 직무수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p>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